검토보고서

의 안 제 43호

2018. 7. 26.

건 명	논산시 납세자보호 조례안 (세무과)	관 사무처리에	관한조례 전부개정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시 장	제안연월일	2018. 7. 12.
소관위원회	행정자치위원회	회부연월일	2018. 7. 12.

보 고 내 용

□ 제안이유

○ 「지방세기본법 제77조」,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2 및 2017 년 12월에 배포된 행전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납세자 보호관의 설치 및 운영,납세자 권리 보호 절차 및 방법 등 그밖에 납세 자 권리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조례명을 「논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」로 변경
- 나. 납세자보호관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세무부서 외의 부서 중 자치행정과에 배치 함(안 제4조)
- 다. 납세자보호관은 6급,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자로 하되, 필요한 경우 세무사 등 민간인을 임명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
- 라. 안건 심의, 고충민원의 분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8조부터 19조까지)

- 마.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안 제20조~제23조까지)
- 바. 권리보호 요청 처리 기본원칙, 권리보호 요청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제24~제28조까지)
- 사. 납세자권리헌장 제정. 권리헌장 준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 29조부터 제30조까지)

□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의 저촉이나 특이한 문제점이 없 다고 판단됨.